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
- 2)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

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

- 1)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
- 2) 법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1호	700만원
나. 법 제7조에서 준용하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2호	700만원
다. 법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3호	700만원